

##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제정 2005. 12. 16 훈령 제472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514호(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2009. 1. 30 훈령 제515호(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4. 1. 17 훈령 제60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59호(안양시 공무원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대상자) 안양시 직장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 가입대상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과 안양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09. 1. 30, 2016. 10. 20>

제3조(주관부서) 동호회의 운영과 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행정국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4. 1. 17>

제4조(동호회의 등록) ① 동호회라 하면 2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직원이 모여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 동호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미모임은 운동, 여가활동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동호회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의 회원은 회비를 자동 이체하는 회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동호회 등록은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동호회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동호회의 활동경비 보조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차량 임차료
2. 단체복 구입
3. 강사료
4. 행사비용(시상품, 다과비, 홍보물 등)
5. 그 밖에 간담회시 필요한 비용(식비, 음료비 등)

제6조(활동경비 보조금지원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경비보조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동호회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활동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관부서에서는 행사 전일까지 활동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활동경비 보조금 지원은 별표의 항목별 배점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도지사기 등 대외적인 대회참가 동호회에 대하여는 활동경비 보조금 이외에 행사지원비, 참가경비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회규모, 예산소요액, 타 동호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① 동호회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에서는 행사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구성) ① 시장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직장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 총무팀장 2인, 여성정책팀장, 체육지원팀장, 회원수가 많은 동호회 회장 2인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복지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동호회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 동호회 등록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동호회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내역 등 유지·관리)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 및 활동내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동호회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동호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호회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호회로 보되, 200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9. 1. 30 훈령 제514호,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시사역인부”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 1. 30 훈령 제515호,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원의외 상근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 1. 17 훈령 제6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59호,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를 “청원경찰 및 공무원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별표]

### 항목별 배점 및 지원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배 점		비 고	
4개 항목	100점	세 부 내 역		
1. 회 원 수	30점	가산1점	2인 추가시마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기준 (자동이체 기준)
		30점	50명 이상	
		25점	40~49명	
		20점	30~39명	
		10점	20~30명	
2. 취미모임 활 동 실적	25점	5점	20명 미만	前반기 실적으로 확인
		25점	8회 이상/반기	
		20점	6~7회 / 반기	
		15점	4~5회 / 반기	
		10점	2~3회 / 반기	
3. 대 내·외적 인 활동실적	15점	5점	1회 / 반기	직장대항 출전, 복지 시설 위문, 전시회, 캠페인, 봉사활동 등
		15점	4회 이상 / 반기	
		10점	2~3회 / 반기	
4. 취미모임 개 설 경과년수	15점	15점	5년 이상	연 3회 이상 활동실적 이 있어야만 경과 년 수 인정
		10점	1년~5년미만	
		5점	1년미만	
5. 회 비 규 모	15점	15점	10천원 이상	정액납부액 기준
		10점	5천원~10천원미만	
		5점	5천원 미만	

점수별 지원기준

평가점수	지 원 액	비 고
40점 미만	미지급	
40~50점	300천원 / 회	
51~60점	400천원 / 회	
61~70점	500천원 / 회	
71~80점	600천원 / 회	
81~90점	700천원 / 회	
91점 이상	800천원 / 회	
96점 이상	900천원 / 회	

※ 지원대상 제외 동호회

- ▶ 활동경비 지원신청서에 회원수, 활동실적 등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 ▶ 지원금에 대한 내역(지원액과 사용액 등)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 ▶ 정산보고(영수증 등 증빙서류첨부) 불이행시

[별지 제1호서식]

### 직장동호회 등록 신청서

1. 동호회명:
2. 구성일자:
3. 등록인원:
4. 목적(취지)
  
5. 00년 활동계획(월별, 분기별 작성)

6.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회 장					
부회장					
총 무					

7. 회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 자동이체 여부 표시

○○○ 동호회장: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장동호회 활동경비(행사지원) 보조금 신청서

동호회명				대표자	
현 황		○ 최초 개설일:   년   월   일			
		○ 회 원 수 :       명			
행 사 내 용	목 적				
	세부계획	○ 일 시: ○ 장 소: ○ 참여계획: ○ 행사주관:			
용	소요예산	계	지원금	자부담	
신청금액		일금                  원정 (₩                  원)			
계좌번호		농협                                  (예금주                  )			
첨 부		1. 동호회 활동(행사)계획서(예산산출내역 등) 1부 2. 전반기까지 활동(행사)실적 1부 3. 회원명단 및 자동이체내역 사본 1부. 끝			

상기금액을   년 상반기(하반기) 직장동호회 활동경비(행사지원) 보조금  
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 동호회장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직장동호회 활동경비 정산보고서						
동호회명				대표자		
활동내용	○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행사내용: ▶ ▶					
지원금액	일금 (₩ )					
정산내역	집행내역	지출금액			잔 액	비 고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증빙서별첨
활동사진	별 첨					

붙 임: 동호회운영 및 활동결과 자체총평 1부.

작 성 자: 총 무 ○ ○ ○ (인)  
 확 인 자: 감 사 ○ ○ ○ (인)  
 입 회 자: 회 장 ○ ○ ○ (인)



### 동호회운영 및 활동결과 자체총평

운영 및 활동현황

구 분	계 획(회수/인원)		실 적(회수/인원)		비 고
	상(하)반기	누 계	상(하)반기	누 계	
계	/	/	/	/	
운영(회의 등)	/	/	/	/	
활동(연습 등)	/	/	/	/	

○ 세부내역

구 분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활 동 (행사) 내 용	비 고

특기사항(애로사항, 문제점, 수범사례 등)

- 
- 

부진활동에 대한 대책

- 
-

[별지 제4호서식]

### 지 원 및 활 동 내 역

활동시기:      기

연번	동호회명	지원현황	활 동 결 과				비 고
			일시	장소	행사주관	세부내역	
계							
1	시 청 닐 시 회						
2	시 청 산 악 회						
3	축 구 동 호 회						
4	시 청 수 영 회						
5	시 청 건 우 회						
6	테니스취미회						
7	국선도선도회						
8	볼 링 회						
9	마라톤사랑회						
10	셔틀콕동호회						
11	시청탁구동호회						
12	아이스하키클럽						
13	어 울 립						
14	족 구 동 호 회						
15	수목담채화회						
16	웰빙요가동호회						
17	기 우 회						
18	만 안 산 악 회						
19	만안헬스동호회						
20	만안탁구동호회						
21	동 안 산 악 회						
22	동안헬스동호회						
23	동안탁구동호회						